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2월 5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우리 시의 경우, 수백 곳에 이르는 재개발·재건축·도시 재생사업이나 대규모의 건축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임
- 나.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수립에 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석면함유제품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
- 마.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및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 바. 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아.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5,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 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6.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 관하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제6조(석면함유제품 등의 실태조사) ①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석면등에 대한 사용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사람에게는 영 제10조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시장은 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7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3조(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에 따른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4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시장은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 부담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영 제5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부과·징수절차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 제12조(지질도 작성) ○ 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28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 제50조(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 석면피해구제법 ○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조례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석면등에 대한 사용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경우

에는 그 가공·변형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제6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지질도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질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전문인력의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질도의 작성 기준,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①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석면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제29조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지원하는 자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3. 석면등을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4.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
5.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자
6.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자
7.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8.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는 석면조사기관
9.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10.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1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는 자
12. 석면해체·제거업자
1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14.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15. 제40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16. 제4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자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5. 구제급여조정금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

에는 제4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자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절차·방법,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지원 조건, 금액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구제급여는 공단에 의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한다.

②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법보전법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석면해체·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슬레이트 처리 지원 : 조례안 제12조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조례안 제15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슬레이트 처리 지원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40%, 시비 30%, 군·구비 30%
 - ⇒ 지방비 부담비율은 대구,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 사례 적용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2012.7월, 건축물대장 공부상) : 22,000동
 -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단가(2013년 기준) : 2,400천원/동
 -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철거·처리 사업은 군·구에서 수행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2013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예산안 기준 적용

나. 추계 결과

- 슬레이트 처리 지원 : $22,000\text{동} \times 720\text{천원} = 15,840,000\text{천원}$ (시비)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480,000천원(시비)

다. 재원조달방안

- 슬레이트 처리 지원 : 국비 40%, 시비 30%, 군·구비 30%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국비(기금) 90%, 시비 10%
- ※ 국비(기금)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군·구로 직접 교부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김상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2018~ 2021년)	계
세입	슬레이트 처리 지원	2,640,000	2,640,000	2,640,000	2,640,000	10,560,000	21,120,000
	소계	2,640,000	2,640,000	2,640,000	2,640,000	10,560,000	21,120,000
세출	슬레이트 처리 지원	4,620,000	4,620,000	4,620,000	4,620,000	18,480,000	36,960,000
	석면피해 구제급여	60,000	60,000	60,000	60,000	240,000	480,000
	소계	4,680,000	4,680,000	4,680,000	4,680,000	18,720,000	37,440,000
재원조달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비 40% 시비 30% 군구비30%	국비 40% 시비 30% 군구비30%	국비 40% 시비 30% 군구비30%	국비 40% 시비 30% 군구비30%	국비 40% 시비 30% 군구비30%	국비 40% 시비 30% 군구비30%
	석면피해 구제급여	시비100%	시비100%	시비100%	시비100%	시비100%	시비100%
국 비		2,640,000	2,640,000	2,640,000	2,640,000	10,560,000	21,120,000
시비	소 계	2,040,000	2,040,000	2,040,000	2,040,000	8,160,000	16,320,000
	일반회계	2,040,000	2,040,000	2,040,000	2,040,000	8,160,000	16,32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7,920,000	15,840,000
민 간							
기 타							